

각 서

1.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에 의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7조 2항에 해당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 각서 등을 제출하겠음
2. 위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기타 어음 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정하겠으며, 계약의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귀 재단의 결정에 따라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 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음
3.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하여 동 선금은 본인의 여타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겠음
4. 선금을 전액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5.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 재단의 결정에 따르겠음
6. 본 협회의 귀책사유 또는 귀 재단 사정에 의하여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 재단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에 따르겠음
7.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 재단에서 본 협회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 재단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음

2017년 4월 3일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16층

상 호 : 한국의류산업협회

대 표 : 최병오 (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귀하